

언론중재법 개정이 왜 언론독재법인가?

2021. 09. 08

황 근(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언론중재법 개정 : 맥락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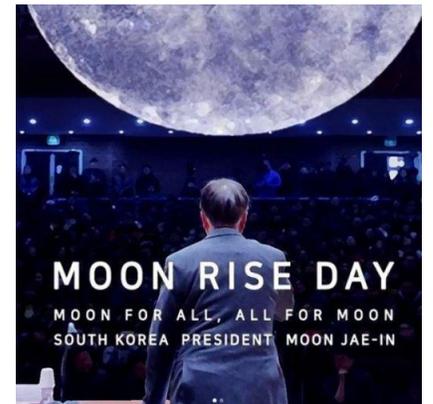
치밀하게 계획된 집권 프로젝트

- 절대권력 구축 => 100년 정권 프로젝트

- 견제 받지 않는 권력 → 권력기구 개편(법원, 검찰, 언
- 권력의 신격화 → 내가 조국이다, 달빛 소나타
- 언론통제 : 견제기능 마비 + 권력통치기구(ideology 기구),



- 역사상 가장 (악랄한) 언론 통제와 지원의 메커니즘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메커니즘

- 직접 통제방식에서 위장된 간접통제방식으로
 -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공익성 표방
 - 내부적으로 국가통제형·권력밀착형 언론 시스템 구축
- 정치적 통제에서 경제적·법적 통제로
 - 경제적 지원방식으로 정권 친화적 매체 육성 지원 (공영방송수신료, 정부광고 지원 등)
 - 비우호적인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법적 통제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내용물 광고제한, 인터넷 규제)

		외적/내적	
		외적	내적
직접/간접	직접	I 법적 통제, 직접 소유 보도지침, 사전검열 블랙리스트, 세무조사 인·허가 제도	II 소유주 통제 인사권 관료적 통제
	간접	III 시장규제(소유구조) 외부협찬·지원 광고주 규제 매체간 견제(비평) 정실주의	IV 조합주의적 통제 노사협약(노조주도) 내적 통제(자기검열)

- 외부 통제방식에서 자발적 통제방식으로
 - 외형적으로 정부 간섭 없이 언론노조나 시청자단체 등 자율적 통제 위장
 - 자발적 통제(self-censoring) : 예측되는 불이익을 우려한 자발적 복종 압박(구글 광고규제, 언론중재법)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메커니즘

	통제 양식	통제 방법
공영방송	노조를 통한 견고한 조합주의 통제	정부의 후견적 지원 (광고규제완화, 수신료 인상 등)
	위장된 탈권력 거버넌스 구축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시민대표성 강화 방송법 개정)
상업방송	노조를 통한 간접 통제	공영방송과 동일한 통제방식 적용
종합편성채널	자기 규제(자기 통제)	방송심의제도와 재허가를 통한 압박
공적 소유 매체	정권홍보매체로 적극 활용	보도/시사프로그램 강화, 친여 성향의 진행자 활용
신문	경제적 지원	정부 광고법 제정/ ABC제도 폐기/ 친여신문 지원
인터넷	포털의 뉴스제공방식 규제 유튜브 규제	포털 뉴스배열에 대한 정권 관여(신문법 개정) 보수 인터넷 언론(유튜브) 광고규제 및 법제화(방송매체 포함)
취재환경	자율규제로 포장된 취재 환경 통제	노조의 뉴스제작 개입(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등)

2. 언론중재법 개정과 문제점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기사열람차단청구권

◦ 법 개정 내용

- (제17조의2)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언론보도의 내용이
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제17조의3, 제17조의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 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불리한 기사 차단, 공적 관심사안, 사회여론 형성 등의 개념 불확실성 -> 권력비리 관련 보도 확산 차단

- 기사의 1,2,3 해당 여부는 법적 판단에 근거 -> 매우 오랜 시간 소요 -> 언론보도의 시의성/시사성 상실-> 언론의 환경감시기능 원천적 봉쇄

징벌적 손해 배상

◦ 법개정 내용

- (제30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도에

한 금액 등을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

우로서 대통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 (제30조의2)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또는 그 밖의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대기

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허위, 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2. 침의 조작보도가 지소적이고 반부적인 경우

입증책임 전환

◦ 법개정 내용

- (제30조의 3)(고의, 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언론사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하는 경우
2. ~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3.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이 있음에도 ~ 열람차단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4.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허위, 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5. 제목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 삽화, 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문제점 1

- 과잉입법/과잉규제

- 중복규제(기존 법규제 존재)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규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

- 기존의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상태

- 입증책임의 전환

- 사또 재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 “법원의 명백한 (명백한) 고의 또는 추정”은 입증책임을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법원이 결정하고, 입증책임은 언론사가

-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문제점 2

- 세계에서 언론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 공익포비아(public-phobia)
 - 대륙법 체계(공법 위주)를 가진 나라로서
계약법(판례위주) 위주의 영미법체계와는 다름(연역적
규제)
 - 언론의 공적책무에 대한 강한 규정
 - 공익에 근거를 둔 언론활동에 positive 규제의 남발
(~만 할 수 있다. ~만 해야한다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공익 비중
과다)

	심사기준	방송법 근거	지상파방송 재허가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TV/Radi o	DMB	종편채 널	보도채 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제17조 제3항 제1호	400	400	400	400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제10조 제1항 제1,3호 제17조 제3항 제3,4호	250	20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제10조제1항 제2호	150	120	190	160
4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제10조제1항 제4,5호	100	18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제10조제1항 제6호 제17조 제3항 2,5,6호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7호	50*	50*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사업자 세부기본계획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에서 정함	
	특기사항	105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 재허가, 650점 미만 사업자 '조건부 재허가' 혹은 '재허가 거부'				

문제점 3

-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적 문제

- 법원의 자율적 판단-> 법에 구체화
- 통상적인 민사에서 3배 수준 -> 5배 과잉규제
- 손해액과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 근거 자체가 위헌, 처분적 규제(종편이나 메이저 언론사를 목적으로 한 규제)
- 현행 500만 이하 배상 수준 -> 10배 ~ 100배 정도의 배상 예상(언론사 경영 압박, 유신시대 광고해지 방식보다 강력)

- 징벌적손해배상의 언론통제 의도

- 직접 통제 -> 간접 통제(민사)
- 정치적 통제 -> 경제적 통제
- 외적 통제 -> 자발적 통제
- 매우 강력하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는 묘수 중에 묘수(?)

정정보도청구권 강화

◦ 법개정 내용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여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보도보다 시간·분량 및 크기를 작게하여 정정보도를 할 수 있

으나, 이 경우에는 원래의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제점

- 반론권(right to reply)과 혼돈

3. 언론중재법 개정의 불순한 의도

자유주의 언론 철학

- 인간은 이성적 :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선택·판단할 수 있음
- 인간의 어떤 생각도 사전에 선·악을 판단해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임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clear and present danger)'

-> 자유주의 원칙에 위반함

- 사전규제(권위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언론관) : 사회주의적 진리
- 사후규제 : 사전에 선·악이 결정된 사상이나 표현은 없음

이성적인(이성적이려 노력하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

- 이익 형량의 원칙 :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 진리는 사회적으로 선택됨

언론의 중요한 원칙 : 다양성(plurality) -> 진리는 경쟁하는 것이

[The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법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 언론중재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언론지원법
 - 언론행위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법안
 - 소송 등으로 인한 법적 소송 전에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중재기능
 - 실효력이 별로 없었음(미국 FCC의 rule -> 1심 판결효과, 불응시 항소심 제소)
 -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이 중소기업 기준을 높게 설정해 도리어 행위를 억제하는
- 열람 차단 청구권
 - 어떤 이슈이든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는 차단
 - 기사에 '차단요청' 표시 : 기사 신뢰도를 추락시켜 불리한 기사의 영향력 약화
 - 뉴스의 시의성, 시사성을 완전히 소멸 : 환경감시 기능 불가능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

한

받지 아니한다.

언론 규제의 기본 원칙

- 이익 형량의 문제
 -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개인 혹은 사회적 이익과 언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의 침해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언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최소 규제의 원칙 : 사전규제 -> 사후규제, 구조적 규제 -> 내용 규제
- '언론의 자유'는 인권선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
 - 표현의 자유 다원적 의미 : 어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은 잘못
자신의 의견을 어떤 제약없이 공표할 수 있는 것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이나 진실 혹은 의견들을 알거나 들을 수 있는 권리
듣지 않을 권리(잘못된 사실, 가짜뉴스 등)
알려지지 않을 권리(사생활, 프라이버시 등)
 - 언론 규제의 중요한 원칙 :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최소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 절차적 정당성 : 입법 절차가 중요
 - 언론의 자유, 공익성, 공적 책무, 공정성, 객관성, 공명성
 -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 의미 :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념 도출 난망
 - 내용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익)
 - 절차적 정의 :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 언론관련법 제정
 - 언론관련법 제정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 + 수용자(국민) => 대중 동의 필요
 - 2008년 사르코지의 신문법 개정, 2년간 토론 끝에 좌절
 - 2005~2006, 미국 IPTV도입 시 전국순회 토론회 2년간 소요
 - KBS시청료, 40년간 인상 불발
 - 이 정부는 과감하다. 개혁이란 미명으로(언론중재법 아직도 많이 있다)

자기 검열(self-censoring)

- 언론에 대한 비공식적/내적 규제외의 하나, 외형적으로는 통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강한 효과 발휘
'내부적으로 스스로에게 부과한 검열' 혹은 '언론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검열하

- 리와 찬(Lee & Chan),

정부나 광고주 대기업 같은 권력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론인 혹은 언론조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비외부적(non-externally)강제 행위

- 자기 검열은 '예견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발생

언론사나 언론인이 보도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공포에서

나오는 자기감시

- 은폐된 외부검열로 개인이나 조직 내부에서 수행되어 검열되고 있다는 인식을 느끼는 못하게 하는 통제기제

-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강한 정정보도청구권 같은 조항들은 전형적인 자기검열 통제전략

- 권력기관이나 권력 인사들에 대한 보도 억제

-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 기피



쟁점 보도의 실종 : 우민화 정책

- 자기검열의 주된 내용은 정치적/경제적 집단의 행위들
 - 환경감시기능, 주요 정책적 이슈/정치적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 다양한 쟁점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 특히 선거기간 중에 쟁점보도는 매우 중요
 - 권력기구/정책이슈/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심층 보도 불가능
 - 관변 언론, 관제 언론만 존재할 가능성
- 1987년 미국 'fairness doctrine(1947)' 폐지
 - 공적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방송의 정책/사회이슈/쟁점보도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
 - 주요 사회적 이슈보도에서 상반된 의견의 균형된 공정한 비율을 맞추는 것이 방송사들로 하여금 쟁점보도를 기피하게 함.
 - 이는 언론이 중요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함.
-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사들로 하여금 정치적·경제적 주요 이슈들에 보도기피현상으로 알권리 침해로 우민화

4. 왜 언론독재법인가?

전형적 수법

- 특유의 갈라치기 + 선/악의 논리 : 분열의 권력정치
 - 가짜 뉴스, 언론의 불공정 보도 -> 개인의 권익 침해 -> 법적 보호 장치
 - 사악한 언론 VS. 약자인 국민 권익 보호
 - 정권의 언론통제를 '언론과 국민의 갈등'으로 포장
 - 정권의 직접 관여 없이 언론사에 대한 간접적 통제
 - 정치적 통제가 아닌 경제적 통제 : 채찍이나 몽둥이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두렵다
 - > 예고된 죽음(예상되는 보복이나 대가, 응징에 대한 공포감 조성)
- 권력의 영속화(견제받지 않는 권력)
 - 언론의 보도 기능 = 국민의 알 권리 대행 -> 언론의 자유 = 국민의 기본권
 - 알 권리의 주된 대상 =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등 -> 민주주의의 토대
 - 과도한 규제-> 자발적 감시(self censoring) -> 권력감시 기능 위축(chilling effect)
 - 권력의 절대화, 감시 받지 않는 권력 = 독재국가
 - 언론중재법 개정안 = 언론 독재법, 언론 장악법 : 언론기본법의 부활

정치적 의도

- 2022 대선에서의 쟁점 선거 기피
 -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와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 중에 전자가 주도할 것
(정권의 정책 실패, 권력형 부패, 불법 행위 등)
 - 회고적 투표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의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위축 혹은 불가능하게 만들
- 대선 패배 이후 선거 불복전략으로 이용
 - 선거기간 중에 언론보도의 불공정으로 인한 패배를 주장하고 무더기 소송전
 - 불법 선거 분위기를 유도해 차기 정권 압박(국정원 댓글, 촛불 항의 등)
-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동원해 지속적 언론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연계
 - 1985년 총선 이후 시청자 운동이 언론노조운동을 거쳐 시청자단체 운동으로 확대
 - 1990년대 시청자 단체를 근간으로 좌파 시민단체들의 창궐 : 김대중 정권의 탄생
 - 2000년 총선시민운동을 계기로 노무현 정권 재창출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한 보도위축

-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 입막음 소송,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 심각할 것
 - 전략적 손해배상을 막을 장치도 없음

미국 헌법상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막기 위해 2019년 29개 주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Anti-SLAPP law)' 제정

 -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4인 재판관 전략적 봉쇄 소송 우려 표명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됐다"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다는 주장
 -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
 - 공법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사실상 징계 및 벌칙 적용(영미법 체계)
 - 언론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사례를 거의 없음
 - 옴부즈맨(Ombudzman)을 통해 언론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를 사법적 절차 이전에 중재/조정하는 역할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장치도 옴부즈맨제도도 없는 상태
 - 정치적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 난무할 가능성
 - 언론시민단체, 관변시민단체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90%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

언론/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 언론인과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 기본권의 문제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 구성의 본질

-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은 개인이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어떤 것이 진실이고 아니고는 공개된 사상 시장에서 판단)

- 국민의 알권리 : 국민 주권주의의 토대

- 언론중재법 개정에 의한 자발적 규제는 알 권리 억제 -> 국민주권 침해 ->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발상

- 대법원 판결(2020.7.16) 이재명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2019도13328)”

언론중재법 개정 전망 및 향후 언론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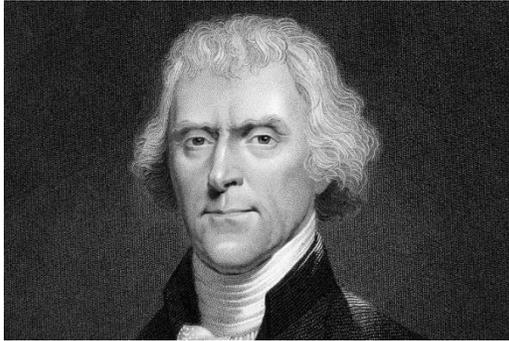
◦ 언론중재법 전망

- 9월 27일 강행처리
- 9월 하순, 여권 대통령후보 확정(유력)시 선거승리를 위해 유보
대권 후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정권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을 다시 제정할
것

◦ 언론통제는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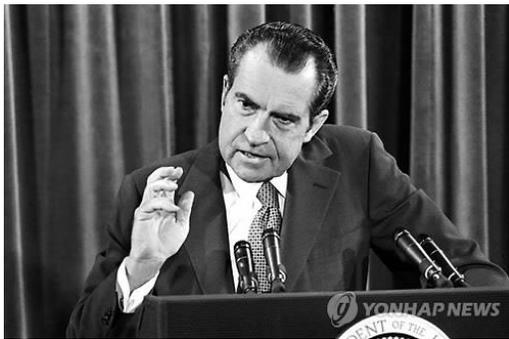
- 인터넷/ 유튜브/ 1인미디어법 : 방송미디어로 법규제화하는 법안
- 정부광고법 : 정부광고 관련 법을 통해 관변 신문/인터넷 언론 지원강화
- 공영방송 거버넌스 : 친정권 시민단체를 통한 이사회/사장 임명 법안
- KBS 수신료 인상 : 조합주의 통제의 마지막 단추
- 마지막으로 종편 채널에 대한 대대적 정비 가능성

정치와 언론의 패러독스



- open marketplace of idea
- 언론 때문에 대통령해먹기 참 힘들었다.
- 언론 없는 정부, 정부 없는 언론

- Falkland(Malvinas) War : BBC의 공정보도
- BBC 칙허장(Royal Charter) 재교부 거부 요



- 미국은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게 패배